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 2021~2024년 -

2021. 5.



관계부처 합동

추진 경과

□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규정

- 최근 문화다양성위원회* 수립('21.2.)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민간 위원장(강원대 한건수 교수)을 포함한 10인의 민간위원 및 10인의 차관급 정부위원 (문체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성부)으로 구성

□ 세부 추진경과

-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작성 및 그간 성과 분석 : '20.3.9.~8.5.

- 문화다양성 대국민 인식 조사 : '20.7.21.~'21.2.28.

- 문화기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20.7.29.~'21.1.29.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브레인스토밍 추진 : 2월~3월(4회)

* ('21.2.19.) 문화다양성 학계 전문가 ('21.2.24.)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기관 ('21.3.5.)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 종사자 ('21.2.24.) 소외·소수 장르 종사자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연구기간 : '21.1.~'21.4./ 주관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문가 의견 수렴 자문회의 : 3월~4월(3회)

* 1차('21.3.31.), 2차('21.4.9.), 3차('21.4.23.)

- 장관 주재 간담회(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건의 등 의견청취) : 5.6.

- 관련부처 및 부내 의견조회 : 5.12.~5.19.

-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 및 조정 : 5.20.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분석	3
1. 국내 정책 환경 분석	3
2. 국외 정책 환경 분석	5
III.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	7
IV.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8
1. 전략 1 : 문화 다양성 보호 및 확대	8
2. 전략 2 :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	12
3. 전략 3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	16
V. 과제별 주관부처	21
[참고자료] 문화다양성 관련 통계	25

1. 추진 배경

□ 문화다양성의 개념

- 법 상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사회 내부 또는 집단·사회 상호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상 문화다양성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문화다양성에는 수단·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진흥·전달 시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생산·보급·유통·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이 포함

□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의 및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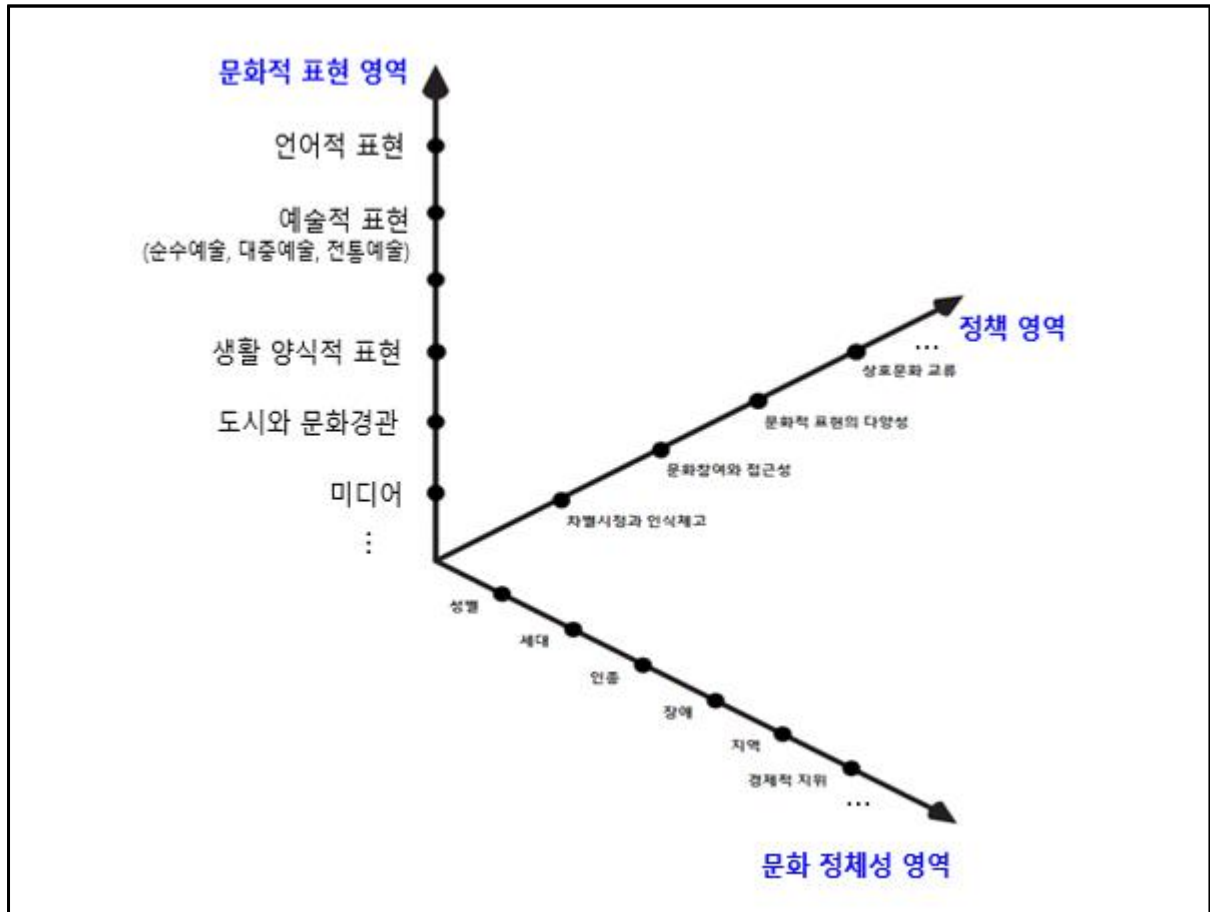
- (국제협약 이행)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
 -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따라 당사국으로 협약 이행을 위해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17), 부의장국(20), 의장국(21)으로 선도적 역할 수행
- (문화다양성의 가치)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 원칙'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 모든 문화의 존중,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문화다양성 원칙>

- | | |
|---------------------------|-----------------------------|
|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원칙 | 5) 개발에서 경제성과 문화적측면의 상호보완 원칙 |
| 2) 주권의 원칙 | 6) 지속가능개발의 원칙 |
| 3)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의 원칙 | 7) 평등한 접근의 원칙 |
| 4) 국제적인 연대 및 협력의 원칙 | 8)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 |

□ 문화다양성 정책 영역

- 문화다양성 정책은 인권 존중 측면의 ①문화적 정체성에 기인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예외 측면의 ②창조성에 기인한 문화적 표현으로 구분



지원 분야

□ 언어적 표현

-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문자와 언어, 기록문화, 문학)

□ 예술적 표현

- 순수 예술(미술, 사진,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등)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
- 대중예술(영화, 만화, 게임 등)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
- 전통예술(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

□ 생활양식적 표현

- 물질적·행위적·정신적 생활양식의 정체성에 관한 영역(한복, 한지, 전통놀이, 한식 등)

□ 도시와 문화경관

- 근현대 역사 및 산업화의 산물 영역(문화적 도시재생, 근대문화유산(건조물 및 기념물))

□ 미디어

- 문화적 표현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신문, 방송, 디지털 등)

II.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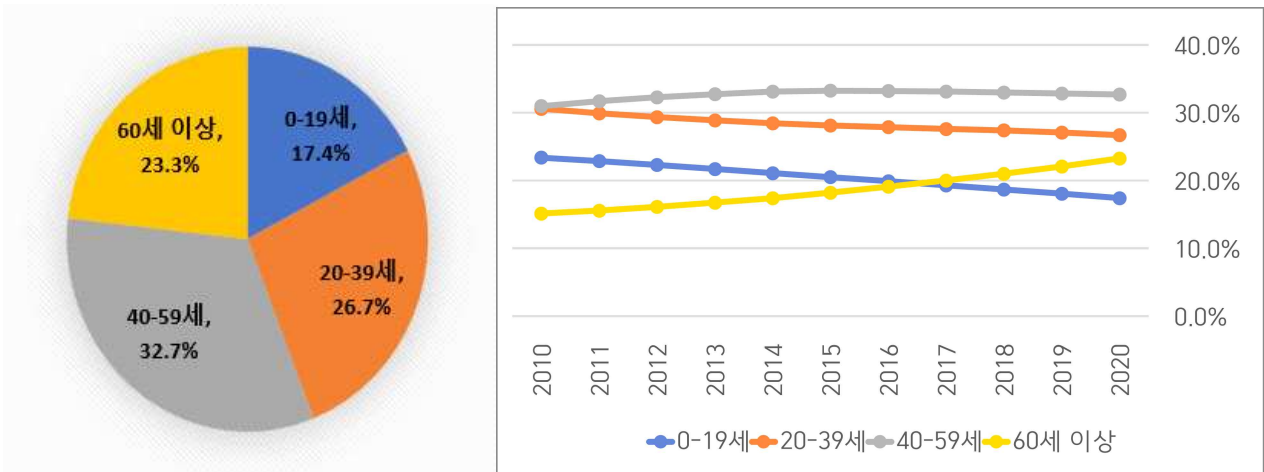
1. 국내 정책 환경 분석

□ 인구 구조의 변화

- (저출생·고령화)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의 인구가 23.3%로 가장 높은 비중, 20세 미만은 17.4% 차지
 -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인구는 15.1%에서 23.3%로 증가하였으나, 20세 미만은 23.4%에서 17.4%로 감소하였음

[2020년 연령대별 인구비율]

[2010년~2020년 연령대별 인구추이]



- (국내 외국인 증가) 국내 외국인 주민은 221만여명('19.11.1.기준)으로 전체 대비 4.3% 비율로 나타나 '다문화 사회(외국인 비율 5%)'에 진입 예정*
 - *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
 - 이 중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약 178만명으로, '18년 165만여명 대비 7.7% 증가
 -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42.6%, 베트남 11.1%, 태국 10.2%, 미국 4.4% 등으로, 28개국 이상 국적자가 체류 중이며, 출신국도 다양화 추세*
 - * 중국 출신은 '15년 50.5%→'19년 42.6%로 지속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 베트남 9.3%→11.1%, 태국 5.7%→10.2%, 미국 4.0%→4.4%, 러시아 0.8%→2.5% 등으로 증가

- (장애인) 등록장애인은 '19년 기준 261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5% 차지
 - 등록장애인 수는 2010년 이후 총인구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수 지속 증가 ('10년 37.1%→'15년 42.3%→'19년 48.3%)로 장애 인구 고령화*에 대응 필요
 - * (연령대별 장애인구 비율) 20대 3.7%, 30대 4.9%인데 반해, 60대 22.3%, 70대 22.2%
- (북한이탈주민) '20년 기준 3만 3,658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0.06% 수준
 - 북한이탈 입국자 수는 '12년 이후 평균 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정착 주민이 증가(5년 이상 거주자 80.5%)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61.6%)에서 차별 경험(18.0%)을 하는 등 문화적 포용의 필요성 대두

□ 사회적 갈등 및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확대

- (사회적 갈등)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념, 소득수준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
 - * 국민은 사회갈등의 정도가 보통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념갈등(4점 중 3.3점)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갈등(4점 중 3.0점)이 높다고 응답('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적 차별) 우리 국민은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지난 1년간 혐오 표현 경험이 64.2%로 나타나는 등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확대
 - * 전체 국민의 70%가 '한국사회 내 차별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 1년 간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이 64.2%으로 나타남('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지역 차별 및 혐오 확대

- (인종차별) '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인종차별 표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종차별 발언 증가
 - * 1월~2월 사이 인종차별 표현이 10만건 이상 언론·인터넷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20년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혐오의 판데믹' 연구)
- (지역차별) '20년 2월부터 3월 사이 대구와 연계된 지역차별 발언이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차별 발언도 증가
 - * 2월~3월 지역차별 표현이 4천여건 언론·인터넷에서 이루어('20년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혐오의 판데믹' 연구)

② 국외 정책 환경 분석

□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종갈등 심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시아계 증오 정서가 미국을 넘어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지로 확산, 일상 속 인종차별, 증오범죄 확대
 - * 아시아계 미국인 증오범죄 2019년 대비 2020년 149%(122건) 증가 및 2021년 3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STOP ASIAN HATE(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운동을 통해 반아시아 감정에 대한 반대 확산
-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범죄 확산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증오범죄법 (COVID-19 Hate Crimes Act)*' 법안 통과('21.4.)
 - * 증오범죄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여러 언어 제공) 사법당국의 신속한 범죄 처리를 의무화

□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반영 확대

- 아카데미상 시상식, 글로벌 OTT 등에서 문화 소비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성 기준 마련 및 관련 조사 실시
 - (미국 아카데미상) 주류 영화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소수인종·민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이 비중 있게 참여하도록 수상자격에 4가지 기준을 신설(2020, Academy Aperture 2025), 2025년부터 시상식 적용
- <미국 아카데미상 다양성 관련 기준(신설, 2025년 시상식 적용)>

분야	내용
화면 속 표현, 주제 및 내러티브	① 주연 배우 혹은 조연 중 적어도 한 명이 백인 외 다인종 혹은 민족 출신 ② 조단역의 최소 30% 이상이 다인종,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중 2가지 이상을 포함 ③ 영화의 주요 줄거리, 주제 또는 내러티브가 소수자 집단에 관한 내용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 구성	① 연출·촬영·작곡·의상·캐스팅·편집·분장·프로듀서·미술·사운드·VFX·작가 등 책임자 직책 중 적어도 두 명이 소수자 집단(다인종·여성·성 소수자·장애인) 출신 ② 전체 제작진의 최소 30%가 소수자 집단 출신
인턴십 등 산업 진입 기회	제작·배급 분야에서 소수자 집단에 인턴십·교육·기술개발의 기회 부여
관객 개발	마케팅·홍보·배급사 내 여러 고위 임원이 소수자 집단 출신

자료: ACADEMY APERTURE 2025

- (넷플릭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제작된 넷플릭스 자사 콘텐츠를 대상 다양성 보고서 발표 등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반영 확대 추진

<넷플릭스 다양성 보고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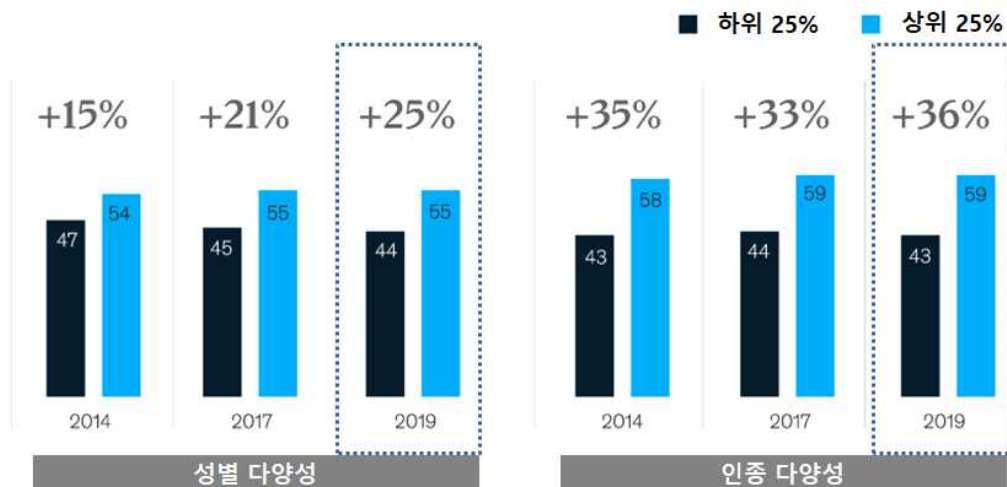
- ※ 넷플릭스(Netflix)사는 콘텐츠에 대한 등장인물과 제작진 구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 * 여성 주연의 작품비중: (영화) 48.4%, (시리즈) 54.5%
 - * 콘텐츠 제작자 별 여성비중: 프로듀서(36.7%) > 작가(36.4%) > 제작자(29.8%) > 감독(27.7%)
 - * 인종 및 민족별 주연 비중: 백인(71.8%) > 흑인·아프리카계(13.0%) > 히스패닉·라틴(4.7%) > 다인종·다민족(3.3%) > 아시안(2.3%) > 중동·북아프리카 1.3% 등
 - * LGBTQ 주연 영화 비중(2018~2019년): (영화) 2.9% → 5.3% (시리즈) 0.0% → 2.1%
 - * 장애인 주연 영화 비중(2018~2019년): (영화) 8.7% → 15.8% (시리즈) 0.0% → 1.0%

□ 기업 운영의 주요 가치로 다양성 주목

-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기업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다양성에 대한 관심 확대
 - 맥킨지(McKinsey)는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과 수익률 간의 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성 가치 강조

<맥킨지의 ‘Diversity wins: How inclusion matters’ 주요 내용>

- 2020년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 상위 25% 기업이 다양성이 낮은 하위 25% 기업보다 수익률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경영진의 인종 다양성 상위 25% 기업이 다양성이 낮은 하위 25% 기업보다 수익률이 36%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젠더와 인종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연령·세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성 강조



Ⅲ.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

비전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

목표
및
가치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생태계 조성

차별시정과
인식제고

정체성 존중

문화참여와
접근성

접근성, 포용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창의성, 반독점

상호문화 교류

개방성, 상호성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1.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 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 ② 국제기구 및 국가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2. 소수자의 문화참여와 접근성 보장

- ③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권 보장
- ④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 ⑤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 ⑥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⑦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IV.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전략 1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 다양한 문화적 표현 확산 지원 및 국제적인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 역할

1-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①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 실현

① 지역어 보존·보호 (문체부)

- 지역의 세대, 성별에 따른 지역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료 조사와 지역어 정보 저장소(아카이브) 구축
- 지역어 다양성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교육 자료로 사용(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

②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 확대 (문체부·지자체)

- 지자체의 공공문화시설 내 점자 표기 및 음성 안내기 설치 활성화
- 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사업 설명 자료에 점자·수어 표기 도입
- 말뭉치 기반의 수-한 및 한-수 사전 편찬 (국립국어원)

※ (수·한 사전) 농인과 청인의 한국수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어 기본형, 변이형, 고빈도 어휘 정보, 입모양, 문법 정보 등 다양한 한국수어 정보를 제시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 (한·수 사전) 농인의 한국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의 의미를 수어로 풀이한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③ 수어방송 비중 확대 및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문체부·방통위)

- (수어방송 비중 확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수어방송 비중 확대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한국수어방송 의무 비율(5%) 상향
 -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요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에 수어통역 제공 권고
- (다언어 프로그램) 아리랑TV와 방송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국·공영 방송사와의 방송콘텐츠 상호 교환·방영을 통해 다문화 방송서비스 제공

④ 세계문자박물관 운영 (문체부)

- '22년 개관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해 문자 다양성 보존·확산에 기여

⑤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확대 (문체부)

- 「민간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마련을 체계적 기반 마련
- 국학자료·전통소재를 활용한 영화·드라마·게임 등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등 민간 기록문화 활용 확대

2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지원

①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 (문화콘텐츠 다양성 조사) 문화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장르, 내용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다양성 확산의 기반으로 활용
-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②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전담기관 지정 (문체부)

- '문화다양성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③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기반 마련 (문체부)

- (독립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 유통 지원 및 관객개발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관객개발 및 독립·예술영화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
- (다원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신규 지원
- (신규 게임기업) 인디게임 개발자, 3년 미만 게임사 대상 공모전을 통해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만화 독립출판) 다양한 만화 유통을 위해 작가 중심 만화 독립출판 지원

③ 전통문화 산업 육성 등 전통문화 보호·증진

①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체부)

- (법적 근거 마련) 전통문화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전통문양 수집 및 디자인 현대화 DB사업 재개로 민간이 산업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 해외 확산 지원 (문체부)

- (해외거점 조성) 전통생활양식(한복, 한지, 한식 등) 등 전통문화 체험·전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전통문화 확산
- (한복문화 해외 확산) △해외 유명 패션스쿨에 한복제작 프로그램 개설 △한류연예인과 한복업체 협업을 통해 한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전통한지 기술의 보존·한지 세계화를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 중국 선지('09년), 일본 화지('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④ 문화적 도시 재생 확산 및 문화 영향 평가 확대

① 도시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문체부·국토부)

- 주민·건축가·예술가 등이 참여하여 만든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 도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 지원
-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담은 골목길 등 문화콘텐츠* 발굴

* 시낭송, 북토크, 토론회, 음악회, 전시, 패션쇼, 아카이빙 등

- '도시재생뉴딜(국토부)'과의 연계를 통해 쇠퇴한 도심에 문화공간 조성, 지역 주민의 소통 거점으로 활성화 지원

* (사례) (포항) 원도심 내 (구)수협냉동창고를 교육·공연·전시 등 복합문화공간화

②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체부)

- 「문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평가 대상 정책·사업 구체화, 평가 결과 반영 의무화 등 실효성 강화
-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 지표 지속 보완·개선

1-2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1 국제사회의 선도적 역할

① 문화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 검토 (문체부)

- 제3세계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마련 검토

* 독일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상호문화정책의 하나로 '세계 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여러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 낭독 워크숍 무용 연극 축제 등을 진행

② 문화 분야 개도국 지원 사업 활성화 (문체부·문화재청)

- 한국의 문화분야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문화동반자' 사업과,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보호 지원 사업 활성화

③ 유네스코 세계 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설립 (문화재청)

- 유네스코 세계 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설립('21.6. MOU 체결 예정)을 통해 세계 유산의 해석 기준 및 원칙 마련, 세계 유산 DB 구축 등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국가 간 협력 활성화

① 문화예술 전문가의 국가 간 교류 지원 (문체부·법무부)

- 국외 문화예술 전문가의 국내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예술인 비자제도 개선 추진

②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 (문체부)

-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확대를 위한 현지플랫폼 진출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신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케이팝 국내 초청 연수·지원, 현지 대표문화 소개 등 문화행사 개최

- ◇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자유권 억압 및 평등권 침해 문제 해결 급선무
- ◇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배제 문제를 극복하고 문화시설 및 미디어 매체의 접근성 강화

2-1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1 문화서비스 제공 기관의 조직 내 다양성 확대

① (성별) 문화 분야 유관기관의 여성 관리자 확대(여가부·문체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문체부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여가부)’에 따른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22년 28%)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유관 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지속 관리

<참고 : 프랑스 문화부 2018-2022 평등 로드맵(Feuille de route Égalité 2018 -2022)>

- ▶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분야 양성평등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 문화시설의 여성 인력 비율을 50%로 확대 계획 발표
- ▶ 프랑스 공공 문화기관 기관장의 여성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2년까지 전국 76개 시설 중 38개 시설에 여성 기관장 임명 계획 발표

② (지역)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지방인재 채용 관리(문체부)

- 문체부 산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행 관리**
 - * 지방이전 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③ (장애) 문화분야 장애인 채용 확대 (고용부·문체부)

- 문화분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원 비율*을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 비율인 3.4%까지 지속 확대를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 조직 내 다양성 확보
 - * 문화분야 공공기관 조사 시 장애인 임원·관리자·직원 비율은 각각 0.1% 0.3% 3.0%에 불과

②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

- 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문체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연간 10만원의 문화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매월 8만원씩 8개월 간 스포츠강좌 수강 비용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실시**
- ② (농·산·어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및 지역 최소보장제 실시 (문체부)
 - 문예회관 등 활용 농·산·어촌 등 지리적으로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지속 실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대상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대비 선정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최소보장제**' 실시
- ③ (장애인)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문체부)
 - 장애예술인 창작,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사업 추진
- ④ (이주민(외국인)·다문화가정) 외국인·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화예술 공모 사업 응모 자격 개선(문체부)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 *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예기금 공모 사업의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

2-2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1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

①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추진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평가 시 접근성 확대 노력 반영 확대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및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시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전시 이용 부가서비스 운영 등 반영 확대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시설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을 통한 인식 개선 지원

②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추진 (문체부)

- 생활SOC 확충을 통해 문화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지원
 -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년 99개소→'21년 120개소) ▲작은도서관 조성('20년 6,703개소→'21년 6,755개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20년 1,212개소→'21년 1,261개소) ▲생활문화센터 조성('20년 334개소→'21년 385개소)
- 박물관·미술관 관람기회가 적은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작은 미술관 조성지원' 사업 등 지속 확대

-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 :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를 통해 전국의 학교와 축제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문화재 체험교육 제공(국립중앙박물관)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전시·미술프로그램 운영 지원(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미디어 이용 역량 강화 및 접근성 보장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문체부·교육부·방통위·과기부·여가부)

- (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3종) 개발·보급
- (성인 대상)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 활용하여 '디지털 배움터' 선정,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가족이 지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지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한 미디어교육 실시

②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체부·교육부·복지부·과기부)

- (저소득층) 저소득층 학생의 원격교육을 위한 인터넷 환경·디지털 기기 지원, 취약계층 불편 해소를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발굴·확산
- (고령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및 콘텐츠 지원
 -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국가기관등의 우선구매 제도 신설(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제4항, '21.6월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대상 확대 추진 중(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1조 등)
 - 고령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디오북 제작 지원
-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접근성 보장 지원
 - 초·중·고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독서 콘텐츠 제작 및 지원 및 영화 관람을 위한 음성 해설·수어 통역 지원
 -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21.6월 시행)를 활용한 장애인 접근성 준수 촉진

전략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 ◇ 개인의 다양한 차이(나이·성별/장애·민족·인종·종교) 존중해 보편적 인권 보장하고
- ◇ 시민들 간 공존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형성하여
- ◇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로의 기반 마련

3-1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1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 ① (영·유아·아동) 영·유아·아동 대상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교육부·문체부)
 - 영·유아(0~5세) 및 아동(6~12세) 대상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지원
 - 누리과정 내 다문화 연계 현장지원 자료 관련 콘텐츠 제공
- ② (초·중·고교) 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보급 (교육부·문체부)
 - 현재 개발중인 문화다양성 교과서(중·고등학교) 학교 보급 확대
 - 현직 및 예비 교원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③ (성인) 다양한 문화다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문체부)
 - 성인 대상 K-MOOC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문화다양성 관련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 실시

2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대상자 확대

- ① 문화분야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문체부)
 - 「문화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문화 분야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규정
- ② 문화다양성 보조사업 수행 시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문체부·예술위)
 - 문화다양성 관련 보조 사업 수행 시 보조사업자의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③ 문화다양성 전문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문체부)

-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지역문화전문인력 등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를 통해 전문 강사 양성
-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문화다양성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④ 제작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기반 조성 (문체부)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대상 제작 지원사업 설명회 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안내 및 사업 종료 시 준수 여부 점검

3 다문화교육과의 연계 강화

① 다문화교육 시 활용할 문화다양성 콘텐츠 확대 (교육부·문체부)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문화 교육' 제시
*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함
- 다문화교육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내용 활동 등 개발·제공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확대 (문체부·여가부)

-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과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 추진

③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여가부)

- 다문화 지원 시설 종사자,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단계적 의무화 추진

3-2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홍보

①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내실화 및 확대 (문체부)

- 지난 '12년부터 지원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 기관 확대 추진
- 사업 프로그램이 특정 범주에 편중되거나 특정 범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 제공

② 문화다양성 주간 인지도 확산 및 내실화 (문체부·법무부)

-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축제화하고 맘프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등 지역 연계를 통한 전국적 확대 추진
- 법무부 등 관계부처 연계를 통한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 행사 프로그램 확대 및 국민 체감도 강화

③ 문화다양성의 정책 반영 확대를 위한 '국민문화포럼' 개최 (문체부)

- 실제 국민 인구구성과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진 100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국민 패널이 참여하는 '국민문화포럼' 개최 추진
-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아시아 문화포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정책포럼 등과 연계하여 포럼 의제 공유, 국제적 문화교류 확장

2 지역 기반 문화다양성 실천 확산

①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추진 (문체부·지자체)

- 「문화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 현재 서울시, 안산시, 부산시 등은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협의회)'를 두는 등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주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음

< 해외 사례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Diversity Advisory Board' >

- ▶ 암스테르담은 18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며 이 중 5개의 주요 이주민 출신의 협회로 위원회가 출범
- ▶ 그러나 '04년 이후 외국인, 여성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9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원이 재편되어 주요 의제 논의 및 정책 자문 수행

②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권고 (문체부·지자체)

- 지자체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마련
 - * 지자체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 10개, 기초 7개 수준('20.7 기준)
- 지역의 실효성있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문화다양성 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권고 및 지원

③ 지역 공모 사업의 통합·연계 (문체부)

- 지역 공모 사업의 통합·연계로 지역의 자율 확대, 기획역량 강화 지원

3 기관 운영의 문화다양성 반영 확대

① 문화다양성 인증제 추진 (문체부)

- 문화다양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 추진
 - 장기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 획득 시 공공부문 입찰 우대 및 정책 금융 우대 등 혜택 제공을 통해 참여 유인 강화

< 해외 사례 : 프랑스의 '문화다양성 라벨(Label Diversité)' >



- ▶ '08년부터 라벨 부여를 시작하여 '20년 4월 기준 112개 기관이 '문화다양성 라벨'을 획득하였음
- ▶ 프랑스표준화협회(AFNOR)에서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하여 라벨을 수여하며, 유효기간은 4년이며 중간 평가가 있음
- ▶ 회사·공공기관·협회를 대상으로 24가지 평가기준(성별, 결혼여부, 출신, 나이, 프랑스어의 능통성 등)에서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라벨을 부여

② 문화다양성 우수 사례 확산 (문체부)

- (안내서 개발)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안내서를 기관 유형별로 개발
- (안내서 보급)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과 지역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운영 안내서를 보급하고 이후 보급 대상 지속 확대
- (우수사례 발굴) 다양성위원회 설치*, 다양성 보고서 발간 등 문화다양성 확산 우수 기관 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 서울대학교(2016.2), 고려대학교(2019.1)는 학내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성위원회 설치

3-3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1 차별표현 시정 및 인식 개선

① 차별표현 발굴 및 대안표현 홍보 (문체부)

- 일상 언어, 표현 및 관습 등에서 나타난 차별표현* 사례 조사 및 차별표현의 대안 표현 마련

* (예시) 미망인, 흑형, 결정장애, 틀딱 등

- 차별표현 및 대안표현 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 국민의 인식 개선 추진

② 차별표현 금지 규정 마련 (여가부)

-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등 금지 관련 조항 신설

2 문화다양성 감수 및 평가·인증제 마련

① 문화다양성 감수성 반영 한국어 교재 인증제 실시 (문체부)

-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감수 기준* 정비

* 감수기준 : ▲평가 영역(내용과 이미지)과 ▲평가 대상(피부색·외모, 민족·인종·국적, 언어, 종교, 지역, 계층, 세대·연령, 성별, 장애)을 ▲기준(다양성, 고정관념과 편견, 집단 간 상호작용 등)에 따라 평가하여 감수

- '문화다양성 감수'를 포함, 교재 품질을 평가하는 한국어 교재 인증* 실시

* 양질의 다양한 교재가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자문·감수 지원, 출간 전후 이를 평가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② 다문화 감수성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여가부)

- 정부 간행물 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추진

③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 운영 (노동부·여가부)

- 다문화 전문가, 이주민(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감수단을 통해 발간 교육 및 홍보자료 검수 추진

V. 과제별 주관부처

전략 1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①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 실현		
① 지역어 보존·보호	문체부	추진 중
② 공공문화시설 내 점자·수어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추진 중
③ 수어방송 비중 확대 및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문체부 방통위	추진 중
④ 세계문자박물관 운영	문체부	'22.상
⑤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확대	문체부	추진 중
②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지원		
①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추진 중
②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전담기관 지정	문체부	'21.하
③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기반 마련	문체부	추진 중
③ 전통문화 산업 육성 등 전통문화 보호·증진		
①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체부	추진 중
②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 해외 확산 지원	문체부	추진 중
④ 문화영향평가 확대 등 문화적 도시재생 확산		
① 도시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	문체부 국토부	추진 중
②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체부	추진 중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2.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① 국제사회의 선도적 역할		
① 문화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 검토	문체부 외교부	'22.상
② 문화 분야 개도국 지원 사업 활성화	문체부 문화재청	추진 중
③ 유네스코 세계 유산 해석 설명 센터 설립	문화재청	'21~'22
② 국가 간 협력 활성화		
① 문화예술 전문가의 국가 간 교류 지원	문체부 법무부	'21~'22
②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	문체부	추진 중

전략 2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2-1.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① 문화서비스 제공 기관의 조직 내 다양성 확대		
① 문화 분야 유관기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여가부 문체부	추진 중
② 문체부 산하 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리	문체부	추진 중
③ 문화 분야 장애인 채용 확대	고용부 문체부	추진 중
②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		
①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문체부	추진 중
②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및 지역 최소보장제 실시	문체부	추진 중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③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	문체부	추진 중
④ 외국인·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화예술 공모 사업 응모 자격 개선	문체부	추진 중

2-2.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①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

①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추진	문체부	추진 중
②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추진	문체부	추진 중

② 미디어 이용 역량 강화 및 접근성 보장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여가부	추진 중
② 미디어 접근성 지원	과기부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추진 중

전략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 일정
3-1.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①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① 영·유아 및 아동 대상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교육부 문체부	추진 중
② 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보급	교육부 문체부	'20~'23
③ 다양한 문화다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문체부	추진 중
②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대상자 확인		
① 문화 분야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문체부	'22
② 문화다양성 보조사업 수행 시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문체부	'22
③ 문화다양성 전문 강사 양성 및 인력 풀 구축	문체부	'22~'23
④ 제작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기반 조성	문체부	추진 중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 일정
③ 다문화교육과의 연계 강화		
① 다문화교육 시 활용할 문화다양성 콘텐츠 확대	교육부 문체부	'22.상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확대	여가부 문체부	'22.상
③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여가부	추진중

3-2.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홍보

①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내실화 및 확대	문체부	추진 중
② 문화다양성 주간 인지도 확산 및 내실화	문체부	추진 중
③ 문화다양성 정책 반영 확대를 위한 국민문화포럼 개최	문체부	'22~'24

② 지역 기반 문화다양성 실천 확산

①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추진	문체부 지자체	'22
②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권고	문체부 지자체	'22
③ 지역 공모 사업의 통합·연계	문체부	추진 중

③ 기관 운영의 문화다양성 반영

① 문화다양성 인증제 추진	문체부	'22~'23
② 문화다양성 우수 사례 확산	문체부	'22

3-3.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① 차별표현 시정 및 인식 개선

① 차별표현 발굴 및 대안표현 홍보	문체부	추진 중
② 차별표현 금지 규정 마련	여가부	추진 중

② 문화다양성 감수 및 평가·인증제 마련

① 문화다양성 감수성 반영 한국어 교재 인증제 실시	문체부	'22
② 다문화 감수성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여가부	추진 중
③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 운영	노동부 여가부	추진 중

[참고자료] 문화다양성 관련 통계

1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와 핵심 가치

정책목표와 핵심가치

□ 차별시정과 인식제고

- 나이, 성별, 장애,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
- 정체성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
 -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 확산이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 포함
- (핵심가치) 정체성, 존중
- (유네스코 협약 기본원칙) ①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원칙
③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의 원칙

□ 문화참여와 접근성

-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장과 관련된 문화참여의 배제와 문화시장의 점유구조 및 불균형 이슈에 관한 문제
-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증진, 그리고 문화상품 보급·배포의 다양성이나 창작자 및 수요자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따른 포용성
 - 문화시설 접근성, 미디어 접근성, 웹 접근성
- (핵심가치) 접근성, 포용성
- (유네스코 협약 기본원칙) ② 주권의 원칙
⑦ 평등한 접근의 원칙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 주류 문화의 지배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 현상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문제
 - 소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 보호를 위해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제
- 소멸 위기의 문화를 포함한 소수 혹은 비주류 문화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
 - 독립예술·전통문화 등의 보호와 증진 정책, 문화의 언어적·지역적 다양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등
- (핵심가치) 창의성, 반독점
- (유네스코 협약 기본원칙) ⑤ 개발에서 경제성과 문화적측면의 상호보완 원칙
⑥ 지속가능개발의 원칙

□ 상호문화교류

- 문화예술의 국가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문제
- 국제기구 및 국가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가간 이동시 문화예술 관련 비자개방, 각국 전통문화의 교류
- (핵심가치) 개방성, 상호성
- (유네스코 협약 기본원칙) ④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원칙
⑧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

②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대상/기간) 만 15세 이상 남녀 3,019명/’20.11.17. ~ ’20.12.11.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주요 내용

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문화다양성의 필요성)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3.85점으로 높게 나타남(5점 만점)
- (문화다양성의 효과) 문화다양성 증진 시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4.11점)가 가장 기대된다고 응답했으며 ‘사회갈등 완화’(3.35점)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5점 만점)
- (사회갈등 위기 인식)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현상으로 사회적 신분(29.3%), 성별(23.4%), 세대(15.7%)에 따른 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②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경험 및 인식

- (포용적 태도) 출신 지역(2.79점), 성별(2.68점)에 대한 포용성이 높고 사회적 신분(2.33점)에 대한 포용성이 낮게 나타남(5점 만점)
- (기회의 평등) 종교(3.22점), 출신지역(3.05점)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장애(2.15점)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낌 (5점 만점)
- (차별 경험) 세대(연령)(39.0%), 성별(36.4%), 학력(26.7%)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 완화 정책) 사회갈등 완화를 위해 장애(84.9%), 성별(80.6%), 세대(76.6%)에 따른 갈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③ 소수자 집단 관련 경험과 인식

- (한국사회 평가) 소수자의 권익이 보장된다(2.64점),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2.51점),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2.49점)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5점 만점)
- (사회적 거리감) 이슬람교인·힌두교인(2.57점), 중국동포(조선족)(2.67점), 성소수자(2.70점)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느낌(5점 만점)
- (미디어 재현 방식) 백인(3.61점), 일본인(2.91점), 이주민자녀(2.80점)는 긍정적으로 재현되나 중국동포(조선족)(2.18점), 성소수자(2.30점), 이슬람교인·힌두교인(2.36점)는 부정적으로 재현된다고 느낌(5점 만점)
- (차별 목격 경험) 장애인(35.0%), 외국인근로자(25.7%), 중국동포(조선족)(23.9%) 순으로 차별을 목격했다고 응답
- (정책 우선순위 대상 소수자 집단) 정책적 배려와 국가 지원이 조속히 필요한 구성원을 물어본 결과, 장애인(70.4%), 결혼이주민(7.1%), 북한이탈주민(6.4%) 순으로 나타남

④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 (장르별 다양성) 영화(3.85점), 대중음악(3.82점), 방송프로그램(드라마 등)(3.60점) 순으로 다양성이 높다고 느낌(5점 만점)
- (장르별 접근성) 방송프로그램(드라마 등)(4.16점), 영화(4.15점), 대중음악(4.11점) 순으로 접근성이 높다고 느낌(5점 만점)
 - 반면, 무용(2.42점), 미술(응용미술 포함)(2.72점), 음악(클래식, 오페라 등)(2.77점) 순으로 접근성이 낮다고 느낌(5점 만점)
- (소멸위기 문화 보존·계승) 문화재·문화유산(3.06점)은 잘 보존되나 지역문화(관혼상제, 향토문화, 지역어 등)(2.42점)은 잘 보존되지 않는다고 느낌(5점 만점)
- (소멸위기 문화 접근성) 문화재·문화유산(3.00점), 전통문화(한옥, 한복 등)(2.95점) 순으로 접근성이 높다고 느끼나 지역문화(관혼상제, 향토문화, 지역어 등)(2.28점)은 접근성이 낮다고 느낌(5점 만점)

③ 문화기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기관운영 수준을 진단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마련을 위한 조사 실시
- (조사 대상/기간) 총 155개 문화기관(문체부 소속기관 19개, 산하 공공기관 32개, 유관기관 12개, 지역문화재단 92개)/'20.12.9. ~ '21.1.8.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컴퓨터 기반 온라인조사(CAWI)

□ 주요 내용

① 경영체계

- (경영 전략체계) 74.5%가 경영 전략체계에 문화다양성 경영원칙을 고려
- (경영성과) 59.4%가 경영성과보고서에 문화다양성 보호·확산 노력을 반영

⇒ 정관, 중기 계획, 연간계획 상에 문화다양성 보호·확산 철학이 반영될 필요
⇒ 경영평가에 문화다양성을 착안사항으로 강조 필요

② 인사·교육 측면

- (인사규정) 73.6%가 인사규정에 차별·배제 금지, 공정한 기회 보장 포함
- (채용·승진) 68.9%가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해 노력
 - 평균 장애인 임원 0.1%, 장애인관리자 0.3%, 장애인직원 3%로 임원 및 관리자 비율은 극소수임
 - 여성임원 25.3%, 여성관리자 33.4%, 여성직원 51.5%로 임원 및 관리자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짐
- (성범죄) 84%가 인사규정에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 및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포함, 직원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61.3%
- (문화다양성 교육) 17.9%는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직장 내 교육을 실시

⇒ 장애, 여성, 청년에 대한 신규채용 인력구성 관리 필요
⇒ 여성 및 장애인 관리자 비율 관리 필요

③ 사업 기획 측면

- (다양한 예술가 지원) 77.2%는 다양한 예술가 지원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이 있음
- (다양한 장르 지원) 44.6%는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연간 사업계획이 있음
- (소수자 문화활동) 58.7%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문화활동 참여 독려 관련 사업 계획이 있음

⇒ 사회적 소수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점, 우선권을 부여 등 절차적 합리성을 보완 필요

⇒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 영역에 대한 발굴, 데이터관리가 필요

⇒ 경제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우선 지원, 신체적·문화적 약자 접근성 개선 필요

④ 보조사업 관리

- (심사위원 구성) 18.7%가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균형안배 또는 사업특성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을 명시
- (이해충돌방지) 42.7%는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
- (소수자 및 소수장르 우선 지원) 27.1%는 사회소수자 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성범죄자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5.2%는 소외장르를 우선 지원
- (보조사업자 교육) 11.5%는 보조사업자 대상 문화다양성 안내·교육을 실시
- (보조사업 결과보고) 13.5%는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노력 및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

⇒ 심사위원 구성비율 관리(여성 비율, 평균연령, 수도권 비중) 필요

⇒ 심의위원 운영관련 규정에 심의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명문화 필요

⇒ 소수분야 장르를 정의하고 보조사업 심의 과정에서 지원 필요(경합 시 우선 순위 부여 등)

⑤ 소장품 및 소장자료 관리

- (심사위원 구성) 6.5%가 소장품 선정 관련 규정에 균형안배 또는 사업 특성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을 명시
- (이해충돌방지) 10.9%는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
- (소수자 및 소수장르 우선 검토) 3.3%는 소장품 및 소장자료 선정에 다양한 예술가 및 소외장르 우선 검토

⇒ 심사위원 구성비율 관리(여성 비율, 평균연령, 수도권 비중) 필요

⇒ 심의위원 운영관련 규정에 심의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명문화 필요

⇒ 소수분야장르를 정의하고 선정 과정에서 지원 필요(경합 시 우선순위 부여 등)

⑥ 시설 대관

- (심사위원 구성) 9%가 대관심의 관련 규정에 균형안배 또는 사업특성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을 명시
- (이해충돌방지) 13.4%는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
- (소외장르 우선 지원) 13.4%는 소외장르를 우선지원(우선권, 세제혜택 등) 하는 것으로 응답

⇒ 심사위원 구성비율 관리(여성 비율, 평균연령, 수도권 비중) 필요

⇒ 심의위원 운영관련 규정에 심의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명문화 필요

⇒ 소수분야장르를 정의하고 대관 심의 과정에서 지원 필요(경합 시 우선순위 부여 등)

⑥ 접근성 제고

-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66%는 이용편의 서비스를 개선(좌석배치,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 방문 및 전화예약 등), 44.3%는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개선(다국적언어, 동영상에 자막 및 수어 제공, 음성서비스 등)
- (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9.0%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분석과 편의증진 노력 필요

⇒ 문화시설 장애물 개선 실적 관리 필요

4 5년간(2015-2019)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 분석

□ 지난 5년간 정책 추진현황 : 사업 수는 증가, 예산 비중은 감소

○ 문체부 포함 11개 중앙부처의 '15년~'19년 문화다양성 사업 수 및 예산 변화 추이 분석

○ (사업 수) '15년 134건 → '19년 262건 (연평균 18.2% 증가)

- (문체부) '15년 121건 → '19년 240건 (연평균 18.7% 증가)

- (타부처) '15년 13건 → '19년 22건 (연평균 14.2% 증가)

☞ '15년, '16년 사업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가로 '17년부터 관련 사업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부처들이 있음

* 국방부, 복지부, 방통위, 외교부, 행안부

☞ 그러나, 문체부 대비 타부처 문화다양성 사업 건수 및 예산은 과소 ⇒ 부처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 정책발굴 의지 필요

¹ ○ (사업예산) '15년 5,765억원 → '19년 5,270억원 (연평균 2.2% 감소)

- (문체부) '15년 5,445억원 → '19년 4,039억원 (연평균 7.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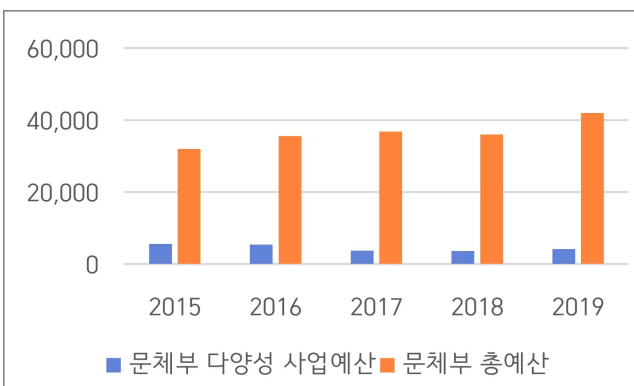
- (타부처) '15년 320억원 → '19년 1,231억원 (연평균 40.1% 증가)

² ○ (예산비중) '15년~'19년 대상부처 총예산은 연평균 32.9% 증가한 반면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은 연평균 2.2%씩 감소하여 사업비중은 연평균 26.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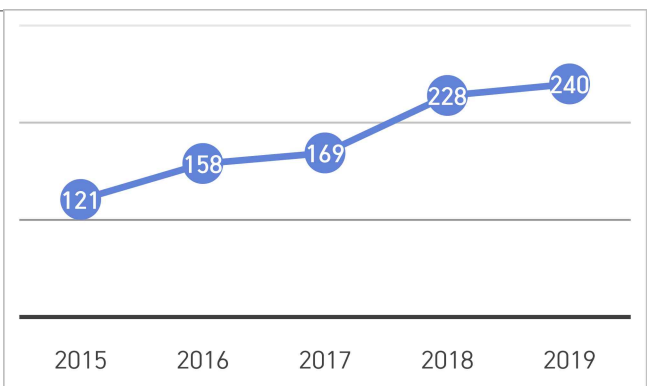
- (문체부) 총예산 대비 다양성 사업비 '15년 9.58% → '19년 5.92% (연평균 11.3% 감소)

- (타부처) 총예산 대비 다양성 사업비 '15년 0.036% → '19년 0.043% (연평균 4.4% 증가)

<2015~2019년 문체부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및 총예산(단위: 억원)>



<2015~2019년 문체부 문화다양성 사업 수(단위: 개)>



<2015-2019년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및 예산 추이>

(단위: 개/ 억 원, 백만원 이하 반올림)

연 번	부 처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	예 산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1	고용 노동부	1	6	1	5	1	5	1	5	1	5	0.0	△4.1
			155,110		172,920		182,614		238,033		267,163		14.6
			0.004		0.003		0.003		0.002		0.002		△16.3
2	교육부	6	227	7	171	5	41	5	31	5	93	△4.5	△19.9
			548,998		557,459		616,317		682,322		749,163		8.1
			0.041		0.031		0.007		0.005		0.012		△25.9
3	국방부	-	-	-	-	1	2	1	2	1	2	0.0	0.0
			-		-		296,858		313,029		331,084		5.6
			-		-		0.001		0.001		0.001		△5.3
4	농림축산 식품부	2	27	1	5	1	5	1	5	1	5	△15.9	△34.2
			140,431		143,681		144,887		144,996		146,596		1.1
			0.019		0.003		0.003		0.003		0.003		△34.9
5	법무부	2	4	2	3	2	4	2	3	2	3	0.0	△6.6
			29,293		30,906		32,984		36,292		38,800		7.3
			0.014		0.011		0.010		0.009		0.008		△13.0
6	보건 복지부	-	-	1	3	1	3	1	6	1	4	0.0	1.4
			-		558,436		576,628		631,554		725,148		9.1
			-		0.001		0.001		0.001		0.001		△7.0
7	방송통신 위원회	-	-	1	347	1	370	1	370	1	372	0.0	2.4
			-		556		545		555		628		4.1
			-		62.30		67.76		66.65		59.19		△1.7
8	여성 가족부	2	56	4	454	4	618	4	612	4	723	18.9	89.4
			6,193		6,116		6,833		7,371		10,475		14.0
			0.91		7.43		9.04		8.30		6.90		66.1
9	외교부	-	-	2	4	2	8	1	4	1	2	△20.6	△20.6
			-		21,707		23,056		23,576		24,500		4.1
			-		0.02		0.03		0.02		0.01		△23.8
10	행정 안전부	-	-	3	17	6	15	5	16	5	22	18.6	9.9
			-		368,834		414,832		486,567		556,817		14.7
			-		0.004		0.004		0.003		0.003		△4.2
소계		13	320	22	1,009	24	1,071	23	1,054	22	1,231	14.2	40.1
			880,025		1,860,616		2,295,553		2,564,294		2,850,374		34.2
			0.036		0.054		0.047		0.041		0.043		4.4
11	문화체육 관광부	121	5,445	158	5,273	169	3,640	228	3,566	240	4,039	18.7	△7.2
			56,846		62,259		64,862		60,596		68,241		4.7
			9.58		8.47		5.61		5.89		5.92		△11.3
계		134	5,765	180	6,282	193	4,710	250	4,620	262	5,270	18.2	△2.2
			936,871		1,922,875		2,360,415		2,624,890		2,918,615		32.9
			0.62		0.33		0.20		0.18		0.18		△26.4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 및 사업예산은 제출자료 기준

주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년~18년 사업자료 제출이 없어 추이 분석에서 제외

주3) 각 부처 총예산 규모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제출예산 참고(본예산 기준/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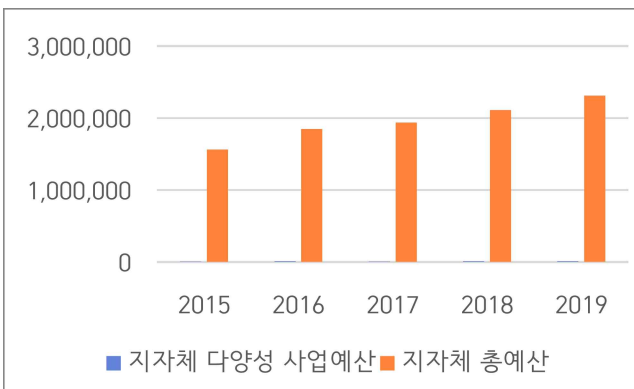
주4)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에는 문화재청 예산액 포함

5 5년간(2015-2019) 지자체 문화다양성 정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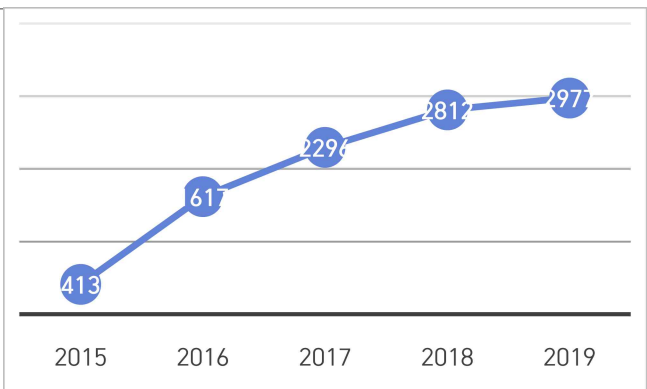
□ 지난 5년 간 정책성과 평가 : 사업 수 증가, 예산비중 약감소

- '15~'19년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는 연평균 63.9% 증가, △총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사업 비중은 연평균 14.1% 증가
- (사업 수) 17개 시·도 모두 증가세를 보임
 -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연도가 존재함. 이는 해당연도에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사업예산) 지자체 평균 총예산은 연평균 10.3%씩 증가한 반면,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은 연평균 25.9%씩 증가
 - *'15년 광주, 세종, 강원, 제주의 자료 미제출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증감율을 계산 시, 지자체 총예산은 연평균 7.8% 증가하는 반면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은 연평균 4.3% 증가(사업비중은 연평균 3.2% 감소)
- (예산비중) '15년~'19년 지자체 총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사업 예산비중은 연평균 14.1% 증가
 - 특히, 전북, 경북, 강원 지역은 최근 4년간 예산비중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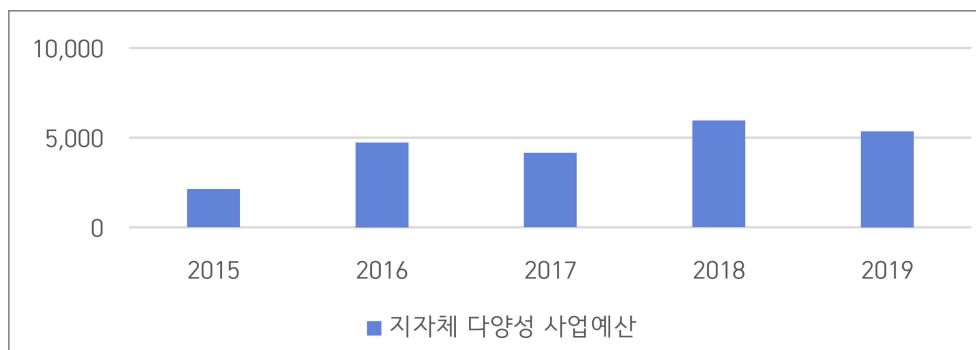
<2015~2019년 지자체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및 총예산(단위: 억원)>



<2015~2019년 지자체 문화다양성 사업 수(단위: 개)>



<2015~2019년 지자체 문화다양성 사업예산(단위: 억원)>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및 예산 추이>

(단위: 개/ 억 원, 백만원 이하 반올림)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2015		2016		2017		2018		2019		연 평 균 증 감 률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개)	사업예산 (A)	사 업 수 (%)	사 업 예 산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총예산(B) 예산비중 (A/B %)		
1	서울	51	1,336	166	2,233	294	2,073	349	2,068	299	1,852	55.6	8.5
			257,990		275,345		299,613		319,856		364,276		9.0
			0.52		0.81		0.69		0.65		0.51		-0.5
2	부산	7	15	371	597	447	613	389	373	283	323	152.2	116.0
			98,988		105,732		107,917		117,176		125,431		6.1
			0.02		0.57		0.57		0.32		0.26		103.6
3	대구	42	103	125	257	130	203	117	234	128	285	32.1	29.0
			66,069		72,132		75,103		82,589		89,920		8.0
			0.16		0.36		0.27		0.28		0.32		19.4
4	인천	31	21	140	581	188	409	192	558	185	571	56.3	127.5
			87,318		89,602		93,242		103,161		115,398		7.2
			0.02		0.65		0.44		0.54		0.49		122.5
5	광주	-	-	75	65	71	12	52	80	144	61	24.3	-1.7
			-		41,061		42,364		47,317		53,284		9.1
			-		0.16		0.03		0.17		0.12		-9.9
6	대전	9	2	38	57	56	26	64	46	60	34	60.7	98.9
			37,342		40,169		40,330		45,962		50,436		7.8
			0.01		0.14		0.06		0.10		0.07		84.5
7	울산	4	2	111	34	150	14	81	29	84	64	114.1	141.2
			33,772		37,240		41,998		43,615		44,573		7.2
			0.01		0.092		0.03		0.07		0.14		125.0
8	세종	-	-	15	12	16	13	16	15	20	20	10.1	18.9
			-		10,488		11,957		14,231		14,686		11.9
			-		0.11		0.11		0.10		0.14		6.3
9	경기	50	110	113	352	195	97	365	763	323	495	59.4	45.6
			331,205		362,495		387,701		432,635		469,700		9.1
			0.03		0.10		0.02		0.18		0.11		33.5
10	강원	-	-	22	59	34	13	81	239	167	189	96.5	47.4
			-		94,160		95,219		101,550		111,464		5.8
			-		0.06		0.01		0.24		0.17		39.4
11	충북	25	60	102	168	156	183	162	233	154	186	57.5	32.7
			70,492		71,267		74,264		80,164		87,312		5.5
			0.09		0.24		0.25		0.29		0.23		25.8
12	충남	34	27	111	56	99	45	154	96	189	114	53.5	43.0
			93,559		102,882		102,535		112,138		122,257		6.9
			0.03		0.05		0.04		0.09		0.09		33.8
13	전북	35	106	68	77	60	78	198	414	323	439	74.3	42.6
			92,005		94,785		97,842		107,388		118,914		6.6
			0.12		0.08		0.08		0.39		0.37		33.7
14	전남	33	19	71	68	165	94	202	413	222	178	61.0	74.6
			113,763		117,039		120,359		131,854		145,414		6.3
			0.02		0.06		0.08		0.31		0.12		64.2
15	경북	43	289	47	58	71	168	191	225	160	386	38.9	7.5
			141,777		152,256		156,047		165,652		175,756		5.5
			0.20		0.03		0.11		0.14		0.22		1.9
16	경남	49	34	39	21	153	82	175	139	211	122	44.1	37.5
			134,930		140,268		142,182		153,655		170,160		6.0
			0.03		0.02		0.06		0.09		0.07		29.7
17	제주	-	-	3	21	11	12	24	19	25	28	102.7	9.0
			-		38,905		42,859		47,841		51,170		9.6
			-		0.05		0.03		0.04		0.05		-0.5
계		413	2,125	1,617	4,717	2,296	4,135	2,812	5,944	2,977	5,347	63.9	25.9
			1,559,211		1,845,825		1,931,532		2,106,784		2,310,152		10.3
			0.14		0.26		0.21		0.28		0.23		14.1